

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준병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8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10. 14.

발 의 자 : 윤준병 · 김병주 · 박용갑
전용기 · 안호영 · 문금주
양부남 · 이춘석 · 朴芝源
박희승 · 김의겸 · 김동아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는 경우 지정의 유효기간이나 재지정 심사에 관한 규정이 없고, 지정 이후 품질·위생 기준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정기적인 사후 점검 및 실태조사 규정 역시 부재한 실정임.

이로 인해 지정 이후 대표자 변경, 폐업, 현지인으로서의 영업권 매각, 한식 메뉴 축소, 품질 및 위생 관리 저하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적시에 파악·관리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, 국가 공인 브랜드로서의 공신력과 국가 이미지가 훼손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,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15조).

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한식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3항)제2호를 제3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의”를 “제5항까지의”로, “지정 기준·절차”를 “지정·재지정 기준·절차, 점검방법”으로 한다.

이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지정 기준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
2.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

4. 지정기간 내에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	제15조(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)
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한식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할 수 있다. <후단 신설>	① ----- ----- ----- ----- . 이 경우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② (생 략) <신 설>	②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가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.
<신 설>	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지정 기준을 유지하는지의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.
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외 우수 한식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.	⑤ ----- ----- ----- ----- .

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. 1. (생략) <u><신설></u> 2.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<u><신설></u>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<u>지정 기준·절차</u>, 표시방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	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제4항에 따른 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3. 제6항에----- ----- 4. 지정기간 내에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한 경우 ⑥ -----제5항까지의----- -----<u>지정·재지정 기준·절차, 점검방법</u>----- ----- -----.
---	---